07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현황 (22.6월 기준)

인증서 번호	지정기업	혁신제품명
2021-22호	(주)래도	교통안전표지
2021-23호		교통정보전광판
2021-24호	건아정보기술(주)	무인교통감시장치
2021-137호	유진기공산업(주)	철도용 연결기
2021-456호	(주)광운기술	조립식 내화채움구조 방화구조체
2021-457호		내화채움구조 방화구조체용 실링재
2021-458호	플랜트에셋(주)	DQCS(Design Quality Check Solution)
2021-459호	인텍전기전자(주)	고장점표정장치
2021-460호	지우이앤이(주)	오염토양 고압세척장치
2021-461호	(주)두잇	지진 조기경보 알고리즘이 적용된 지진가속도계
2021-462호	블락스톤(주)	도로 환경 모니터링 및 제어 프로그램
2021-463호	(주)이건산전	철도차량 동력제어장치 IGBT STACK
2021-464호	(주)포이닉스	RSBS 복층 배수성저소음 포장

2021년 공공기관 31개소에 58건 계약으로 매출 76.3억 원 매출 달성!

08 수요기관 혁신제품 구매 시 혜택

수의계약 근거

혁신제품은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음

- 법적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지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 · 지목

구매 면책

혁신제품을 구매한 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제품 구매로 발생한 손실에 책임이 없음

-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기관평가 반영

기관별로 총 물품 구매액의 1.6%(지자체 0.8%)만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해도 실제 구매 실적이 기관 평가에 반영

- 혁신구매액 인정 범위: 혁신제품 구매액 + 기타혁신구매검진대회 공모사업 상금 및 공공부문 R&D 결과물 구매액 등
- 정부혁신평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자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평가항목 및 지표, 측정기준 등 세부시험은 기관에 평가계획 참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판로개척**의 가장 빠른 길!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가 함께하겠습니다.

KAIA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혁신제품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국토교통 R&D 사업화를 위한
가장 빠른 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금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 KAIA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1 혁신조달이란?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

▶ 공공조달 문턱을 낮추어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초기 시장을 형성하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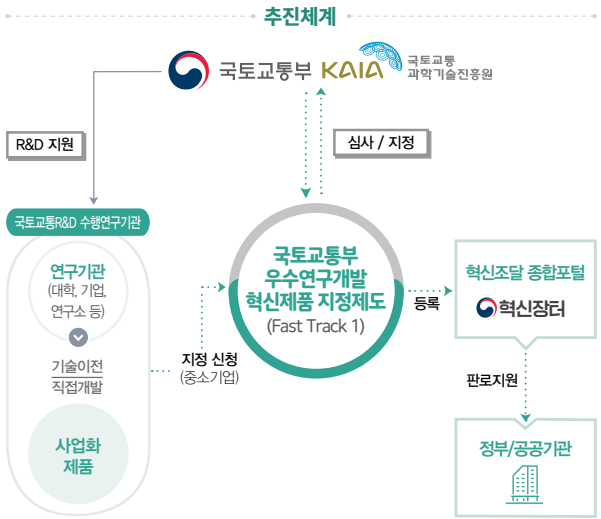
혁신제품 지정 유형

구분	내용	확정
패스트트랙 Ⅰ	**R&D 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각 부처)	조달정책심의회 공공 수요 발굴 위원회 의결
패스트트랙 Ⅱ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 · 공공성 인정 제품(조달 청)	
패스트트랙 Ⅲ	**그밖에 혁신성 · 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 (부처 추천 → 기재부·조달청 평가 선정 및 위원회 상정)	

(지정효과) 수의계약, 구매면책, 시범구매, 혁신구매목표제 등 특례를 제공하여 공공구매 확산 지원

02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국토교통부 주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며 제품화에 성공한 결과물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03 제도 개요

목적 국토교통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는 제도

신청 대상

❶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❷ 종료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완료 (성공 또는 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60점 이상, 2021.11.17 이전) 또는 보통 이상(2021.11.17 이후) 통보를 받은 기술

**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추진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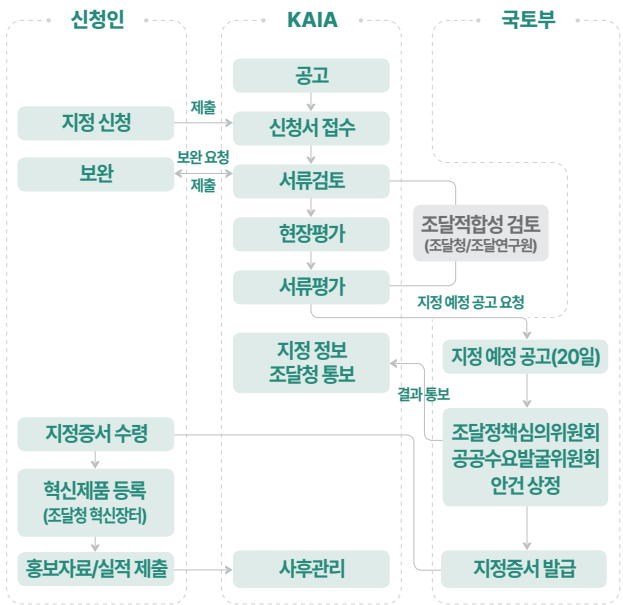
❶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❷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훈령 제524호)

❹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국토부고시 제2021-1044호)

04 지정 절차



05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혁신조달 사업은 연 4회 공고하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이 가능

* 2022년은 2, 5, 8, 11월 공고 예정

신청 방법

❶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❷ 국토교통과학기술기술진흥원 접수처로 신청서류 제출(이메일)

제출 서류

❶ 공문 ❷ 신청서 ❸ 제품설명서

❹ 제품 규격서

❺ 기타 기술혁신성 심의 자료 증빙

평가 내용

❶ 기술혁신성 평가

❷ 조달적합성 평가

06 지정 혜택

혁신조달 지원

혁신제품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간 수의계약으로 구매 가능

혁신제품 구매 실적은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에게 면책 혜택이 제공되므로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유리

시범구매사업 신청 자격 부여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을 신청하면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한 뒤 수요 기관에 제공해 시범 사용이 가능

공공발주처 설명회 참여 기회 부여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 참여를 지원

* 매년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매칭하고 설명회 참여 및 홍보컨설팅 제공

시범사용 신청 (혁신장터) → 테스트 매칭·계약 → 테스트 진행 후 완료보고서 제출

↓

테스트 결과의 혁신성평가 진행 → 성공 판정 시 우수 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부여 → 심사위원 2/3 이상 '적절' 평가 시 1차 심사 통과